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2855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편성 대비 95,906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입 계획에 반영하고,

- 나. 증가한 예치금 회수액을 반영하여 2025년 지출 계획상 비융자성 사업비는 86,064백만원으로, 여유자금 예치금은 78,524백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 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 2025년 수입계획 변경 내용

(단위: 천원, %)

구 분		당 초 (A)	1차 변경 ※변경없음	2차 변경 (B)	증 감(B-A) (증감률)
합 계		68,692,849	68,692,849	164,598,298	95,905,449 (139.6)
세외수입		31,279,077	31,279,077	31,279,077	- (-)
경상적세외수입		3,405,505	3,405,505	3,405,505	-
이자수입		3,405,505	3,405,505	3,405,505	-
공공예금이자수입		3,405,505	3,405,505	3,405,505	-
임시적세외수입		1,523,159	1,523,159	1,523,159	-
기타수입		1,523,159	1,523,159	1,523,159	-
그외수입		1,523,159	1,523,159	1,523,159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26,350,413	26,350,413	26,350,413	-
부담금		26,350,413	26,350,413	26,350,413	-
부담금		26,350,413	26,350,413	26,350,413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413,772	37,413,772	133,319,221	95,905,449 (256.3)
보전수입등		37,413,772	37,413,772	133,319,221	95,905,449
예치금회수		37,413,772	37,413,772	133,319,221	95,905,449
예치금회수		37,413,772	37,413,772	133,319,221	95,905,449

- 2025년 지출계획 변경 내용

(단위: 천원, %)

구 분	당 초 (A)	1차 변경 (증감률)	2차 변경 (B)	증 감(B-A) (증감률)
합 계	68,692,849	68,692,849	164,598,298	95,905,449 (139.6)
비용자성사업비(정책사업비)	1,096,381	1,306,381	86,064,381	84,968,000 (7749.9)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1,096,381	1,306,381	86,064,381	84,968,000
다동공원 조성사업	1,096,381	1,096,381	85,854,381	84,758,000
시설비	-	-	84,758,000	84,758,000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96,381	1,096,381	1,096,381	-
창동차량기지 S-DBC조성 MP단 운영	-	30,000	30,000	30,000
사무관리비	-	30,000	30,000	30,000
김포공항 모빌리티 산업개발 진흥지구	-	50,000	50,000	50,000
시설비	-	50,000	50,000	50,000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 조사 및 분석	-	50,000	50,000	50,000
시설비	-	50,000	50,000	50,000
성북동 골목길재생 매입공가 보수	-	30,000	30,000	30,000
시설비	-	30,000	30,000	30,000
수색역 일대 지역상생 발전계획	-	50,000	50,000	50,000
시설비	-	50,000	50,000	50,000
행정운영경비	10,000	10,000	10,000	-
기본경비	10,000	10,000	10,000	-
기금 관리비	10,000	10,000	10,000	-
사무관리비	10,000	10,000	10,000	-
재무활동	67,586,468	67,376,468	78,523,917	10,937,449 (16.2)
보전지출	67,586,468	67,376,468	78,523,917	10,937,449
여유자금 예치	67,586,468	67,376,468	78,523,917	10,937,449
일반예치금	67,586,468	67,376,468	78,523,917	10,937,44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¹⁾

-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7년도부터 도시의 재생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가 959억 5,000만원 증가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도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에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재원중 109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예치하고, 다른 정책사업인 **균형발전 기반 제고**에 849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 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1)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²⁾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이와 연동된 지출계획에도 여유자금 예치와 세부사업에 대한 추가재원을 지출계획한 것으로

-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인 **균형발전 기반 제고**는 세부사업(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의 사업내용인 ①다동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 847억 5,800만원을 신규 지출계획하고, ②김포공항 모빌리티 산업개발 진흥지구 시설비 5,000만원을 포함한 5개 사업내용³⁾에 2억 1,000만원을 순증하여 지출 계획 하려는 것으로

■ 정책사업인 **균형발전 기반 제고**는 당초 지출계획(10억 9,600만원)보다 7749.9%, 849억 6800만원 증액된 860억 6400만원으로 지출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그러나 다른 정책사업인 **재무활동(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의 경우에는 당초 지출계획(675억 8,600만원)보다 16.2%, 109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이기에 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3) ①창동차량기지 S-DBC(Seoul Digital Bio City)조성 MP(Master Plan)단 운영 (시설비 3,000만원 신규 지출계획)

②김포공항 모빌리티 산업개발 진흥지구 (시설비 5,000만원 신규 지출계획)

③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 조사 및 분석 (시설비 5,000만원 신규 지출계획)

④성북동 골목길재생 매입공가 보수 (시설비 3,000만원 신규 지출계획)

⑤수색역 일대 지역상생 발전계획 (시설비 5,000만원 신규 지출계획)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다른 정책사업의 세부사업을 증액하여 지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운용중인 도시재생기금에 대한 수·지 균형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동 기금의 용도⁴⁾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에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원을 지출계획중 예치금에 우선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어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기금은 1차적으로 재원조성을 통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조성·운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원을 예치금에 과소 계상할 경우, 다음연도 기금운용재원에 대한 한정성을 미리 사실상 확정하는 행위일 수 있어 기금운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도시재생일반계정)

① (생략)

② 도시재생일반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관리 비용
3.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의 범위안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7. 사업기간이 종료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8. 도시재생일반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비
10. 차입금 및 이자 상환
11.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12.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용